

2024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3. 7.(목)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장, 이종수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9 : 2021년, 2023년 홍대입구 등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및 2023년 천호, 송파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 2024-10 :(시설보수과-483) 수처리 시설 덮개 제작 구매 (2차)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 2024-11 :(시설보수과-483) 수처리 시설 덮개 제작 구매 (2차)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 2024-12 :(시설보수과-483) 수처리 시설 덮개 제작 구매 (2차)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 2024-13 :(시설보수과-483) 수처리 시설 덮개 제작 구매 (2차)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9 : 보류 ○ 2024-10 : 인용 ○ 2024-11 : 인용 ○ 2024-12 : 인용 ○ 2024-13 : 인용

1. [의안번호 2024-9] : 2021년, 2023년 홍대입구 등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및
2023년 천호, 송파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
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9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는 한번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신청을 한 업체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업체 또는 제작업체인가요?
아니면 관련이 없는 그러한 회사인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가요?

○ 담당자

스마트쉘터 유지관리 업체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입니다.

○ 000 위원(장)

입찰에 떨어진 업체로 이의신청을 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의신청자는 용역상 원가랑 실제 원가 간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는 예정가격의 기준인 그런 부분이므로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자가 요구하는 자료와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도, 2023년도에 관리위탁 입찰공고 시 원가 계약서를 공개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2021년, 2023년에 공개하셨던 원가계산서랑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내부 자료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가요?

○ 담당자

별건이니까 내용 자체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다른 기관 사례도 봤는데요. 원가 산출과정이나 아니면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원가계산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 000 위원(장)

네.

○ 담당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원가계산보고서가 공개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공고를 할 때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게끔 돼 있는데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내부 검토자료로써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받은 자료라서요.

이거를 보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 업체가 지불한 금액은 가격제안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사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 관련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본건이 유사사례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담당자

저 도서구매 입찰 관련 기초금액 산출한 내역을 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경우가 다른 건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판매단가라든지 노무단가

라든지 그런 걸 곱해서 그런 자료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입찰 관련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산출기초가 포함돼 있겠지만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이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지금 종료가 된 건이잖아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종료가 된 건이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의향이 없으시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담당자

맞습니다.

향후 입찰에 다시 또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입찰과정에 다시 부치게 되는,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공개될 경우에는 향후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추후에 소송자료라든가 그런 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자료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자료, 보고서를 공개를 한다면 공개서에 나와 있는 기준액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만약에 업체가 지원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 담당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유롭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내부자료라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당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내부검토 중인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봐도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또는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거나 공개될 경우 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지만요.

지금 이미 입찰이 끝났고, 그리고 원가계산서가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내부 검토자료면 몰라도 이미 내부자료로서 검토가 끝난 상황이면 저는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지금 정보공개법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담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고요.

다만 이게 입찰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꼭 유지돼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입찰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공개 내부자료를 공개하게 될 경우에 향후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원가계산서라는 게 향후에 이 동종의 사업으로, 하여튼 향후에 재입찰이 또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해서 원가계산서가 항상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담당자

산출하는 방식 같은 것은 똑같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될 텐데요. 저희가 입찰 추진대상이,

○ 000 위원(장)

문제는 그러면 해당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가계산서의 내역을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업체도 전문업체인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 쉘터 관련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 업체도 이 사업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나름대로 본인의 노하우를 갖고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이미 일회성으로 끝난 원가계산서를 계속 앞으로도 사업에 어떤 재활용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공개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네요.

○ 담당자

말씀해 주시는 사항같이 업체에서도 입찰을 할 때 내부적인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입찰을 하겠지만 예정가격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인건비라든지 노무비, 재료비라든지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과 그리고 광고수입, 예상수입을 따져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정산에 참고사항이므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내용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제가 000 위원과 관련된 질의 한두 개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입찰계약할 때, 입찰조건을 제시했을 때 원가계산서 같은 거 전혀 공개 안 했었나요?

○ 담당자

그동안에 진행됐던 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 000 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요.

○ 담당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원가계산서 공개한 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그럼 무슨 입찰계약할 때 원가계산은 전혀 지금 다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건만 안 한 건가요?

○ 담당자

진행할 때 그 입찰의 예정가격이라는 거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예정가격을 매기기 위한 내부적인 사전절차로써, 근거자료로써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해서,

○ 000 위원(장)

거기는 안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사업자들이 제시를 하는 거지요?

○ 담당자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여기 비공개 사유를 보면 이의신청서에는 입찰계약과 관련된 사유로 해서 5호로 제시를 해 줬는데 여기 안전상정요청서에는 근거가 없어요.

5호인가요, 아니면 내부 검토자료라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계약인가요?

사실 근거가 없다면 공개가 맞거든요, 원칙상으로.

○ 담당자

5호 사항, 내부 검토사항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향후에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향후 계약이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라서 향후 계약에 어디다 쓸 건지. 사실이 사업을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제시한 건데, 다음번 어느 사업을 위해서 이걸 또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스마트쉘터 설치공사를 할 때 그때 쓴다는 건가요?

○ 담당자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3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승차대 구간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자료가 공개되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입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진행될 계약 부분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거나 부정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입찰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원가 같은 거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익 계산도 제대로 산출해서 낼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담당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업체가 입찰할 때 가격제안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자기들이 수입이나 비용분석을 해 봤을 때 예정가격보다 수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입찰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요? 비공개 사유로 명확히 딱 떨어지는 게 제 생각에는 없어서 서울시 담당관의 입장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물은 건데요. 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담당자님,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원가계산보고서를 공개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당 업체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능력과 역량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업체가 수입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가격을 되게 낮춰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원가계산보고서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낮게 입찰을 했을 경우에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인가요, 이게?

○ 담당자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서울시가 입찰 예정가격을 공지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대부분 그 선에서 신청을 하지 않나요?

○ 담당자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업체가 지금 우리가 제시한 세부내역을 보고 가격을 좀 높여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000 위원(장)

담당자님, 행안부의 2021년 정보공개운영안내서를 보면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 또는 뭐 등등등 해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스마트쉘터 사업 관련해서는 입찰이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난 상황이고, 향후에 이 동종 사건의 사안에서 재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원가계산서는 이 물가 상승 등등 해서 전혀 하여튼 맞지 않기 때문에 원가계산서가 다음번에는 다시 파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담당자

향후 입찰과정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 물가 상승분이나 충분히 그런 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원가계산서가 공개가 되면 해당 경쟁입찰을 할 때 어느 사업자는 우리는 이 원가보다 우리는 한 10% 마진을 보고 우리는 입찰에 응하겠다, 또는 우리는 10%로는 부족하다, 20%를 보고 마진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의 시공능력이나 조건을 갖고서 해당 스마트쉘터 시공능력 부분은 다른 자격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원가계산서 부분은 꼭 굳이 이렇게 계속 비공개를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000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유에 보면 제시하는 것 관련해서 딱히 비공개로 해야 될 어떤 특정 사유가 잡히지를 않거든요.

○ 담당자

비공개 사유로 제출한 부서 의견에는 9조 1항 5호로 제출을 했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5호가 입찰계약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게 입찰계약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자료고, 다음에 추가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입찰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입찰 때는 이 원가계산서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설령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이 사업을 하면 대충 그 원가계산서의 내용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체는 한 20% 마진을 보고 들어가겠다, 우리는 30% 마진을 보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담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진을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은 예정가격을 보고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지요.

○ 담당자

원가내역을 굳이 알 수 없어도 예정가격만 보고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 000 위원(장)

서울시가 이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산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한테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입찰계약이라기보다는 입찰계약을 위한 전 단계에서 서울시의 내부 검토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미 입찰계약은 끝났고, 입찰과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면 입찰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입찰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입찰계약을 위한 전 단계에서 내부검토고요. 이미 내부 검토가 다 끝났고, 입찰계약도 끝났다면 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거는 비공개해야 될 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꾸 뭔가 앞으로 있을 어떤 불이익을 위한 뭐 부정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막는다고 하니까 그 비공개 사유가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서 저희가 비공개 사유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저희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000 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요.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 해당 관련 사업의 원가계산서하고, 다음에 행안부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하고 원가계산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당해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단서 부분은 입찰 이전에 공개하는 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미 입찰이 끝났잖아요. 이미 입찰이 끝났는데 이 원가계산서가 다음번 입찰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이유가. 문제는 이 원가계산서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 담당자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해설 부분에 당해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

시하는 동종사업의 계약사무에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령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해설서랑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 사유겠지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한번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계약건이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입찰 물량에 대해서 반복해서 입찰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담당자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공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정가격을 공개를 할 때는 단순히 예정되는 최종금액만 명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간략하게라도 어떤 산출근거가 같이 붙어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 담당자

예정가격만 공개가 됩니다.

○ 000 위원(장)

예정금액만 되는 거예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신 비공개 자료에도 원가계산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다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율 산정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발생률로 산정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법령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기준 비율 이런 걸로 산정된 거라서요.

이것이 특별히 이미 알 수도 있고, 이게 추가로 알려진다고 해서 어떠한 공정한 사무에 영향을 끼칠까 싶기도 하거든요.

○ 담당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런 수치라든지 퍼센트 대비해서 산출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연 단위당 콘텐츠 유지비라든지 그런 지침에 없는 그냥 내부적인 자료로 인해서 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발표된, 그러니까 기존 법령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비율 말고 내부적으로도 새롭게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비율 같은 거는 공개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시라는 거지요?

○ 담당자

향후에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계약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서 입장은 비공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담당자님, 계속 반복되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법과 관련돼서 몇 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담당자

5호를 적용하면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000 위원(장)

스마트쉘터사업 계약이 몇 년마다 갱신이 되나요? 이거 갱신될 때마다 원가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 담당자

맞습니다.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담당자

3년 정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3년 뒤에는 또다시 입찰계약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 담당자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그때마다 이 원가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새로 용역을 안 주고 기존에, 처음에 발주했던 원가계산을 가지고 또다시 입찰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 담당자

아니요. 그때 돼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원가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거는,

○ 000 위원(장)

방식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담당자님, 지금 비공개 자료로 나와 있는 예정원가조사보고서를 보면 지금 업체에서 2021년 6월달에 작성 보고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3년 단위로 재계약·재입찰을 하게 되면 3년 뒤에 이 업체에서 2021년 6월에 작성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또 업체에서 3년 뒤에 다시 새롭게 예정원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 담당자

새롭게 작성합니다.

○ 000 위원(장)

그렇지요? 새롭게 작성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는 일단 용역사업으로 수주해서, 그런데 보면 거의 내용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수치만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 담당자

형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수치만 달라지고,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는 3년 전에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다음에 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의 용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 담당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이 업체 서울시 산하 연구원입니까?

○ 담당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장)

사단법인이에요. 서울시랑 관계없습니다.

○ 000 위원(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담당자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저는 이게 계속되는 계약업무라서 만약에 이거를 공개한다라고 하면 해당 입찰하는 업체

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그러한 포맷이라든지 유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서부터 비공개였는데요.

그런데 000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비공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000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딱 지금 특정하게 해당되는 사유를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앞서 지금 담당 주무관께서도 확인해 주셨지만 지금 비공개로 돼 있는 해당 자료가 이미 3년 전의 자료입니다. 3년 전의 자료고,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는 향후에 3년 경과하고 재입찰이 이루어지면 해당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새로 작성되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기 입찰이 끝난 사항이고, 이 상황을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3년 전의 자료고, 그리고 향후에는 새롭게 원가조사보고서가 다시 재작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특정 사유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걸 설령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공정한 입찰과정에 크게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의견입니다. 인용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공개 의견인데요.

서울시 담당자는 입찰산식, 원가산식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비공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부검토가 아니라 이 전체를 전부 다 입찰계약으로 포섭을 해서 입찰을 위한 검토고, 입찰과정

에서 만들어진 서류라고 본다면 이걸로 비공개로 포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도 공개 의견이기는 합니다.

000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000 000 위원(장)

글쎄요. 어쨌든 저는 이 해당 입찰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기본적인 입찰 관련된 기본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입찰과정에서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예정원가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여튼 광고수익, 광고판 수익까지 포함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비공개 사유가 이 해당 업체에서 3년 뒤에도 원가예정보고서를 거의 뭐 똑같은 포맷에 안에 있는 수치만 바뀌어서 저는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에 비공개인 건지도 하여튼 의문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또 원가예정보고서라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작성 제출할 건데요. 문제는 그러면 똑같이 용역보고서 비용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안에 수치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뭐 물가 상승 다 고려해서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보고서를 계속 활용하면서 예정 원가보고서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공개로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 000 위원(장)

산식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고서가 전부 다 공개가 돼버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노출이 되는데, 사실 이 서울시가 이 산식을 정리해서 이의신청인한테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인은 이 보고서 전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비공개를 한 거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좀 요약해서 원가계산 같은 경우를 공개를 해 주면 그 부분은 이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 보고서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을 공개를 해버리면 또 서울시의 앞으로 업무 지장을 저희가 너무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너무 공개를 해버리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면 법원 가서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고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자꾸 이렇게 공개로 바로 의견을 내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저는 오히려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산식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식은요.

○ 000 위원(장)

산식은 공개를 하는데, 이 보고서 전체를 다 공개를 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조금 요약해서 공개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전체가 다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신청인한테 요약을 해서 공개를 하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들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요약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에는 아마 총액만 올라가 있을 거고요.

○ 000 위원(장)

네, 아까 총액만 올리셨다고.

○ 000 위원(장)

총액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총액 안에서 업체에서 작성을 했던 것처럼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가 리뷰를 해서 낙찰업체를 결정을 하는 건지 그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작성을 하고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업무상 노하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7호에 따라서, 아까 000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보고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비공개 자료가 3건이라서요. 그래서 저도 조금 주저주저 되는 게요. 이게 만약에 계속되는 계약업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걸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모든 업체들이 이 서식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분별력 있는 그러한 자료로써 작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업무에 지장도 일정 부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000 위원(장)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쨌든 이 당해입찰이 끝나기는 했지만 이게 유사입찰이 향후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서 자체를 입찰에 대한 문서로 포섭해서 기존 주무부서 의견대로 5호로 포섭하는 것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000 위원님처럼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래로 쪽 내려다보면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노임단가를 결정할 때도 어떤 직종의 노임단가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경비율을 적용을 할 때도 어떤 업무 부분의 경비율을 여기에다 적용했다. 그리고 보수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수내역이 없어서, 환승센터 보수를 적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향후에 3년 뒤라고 말씀 주셨기는 한데요. 다시 입찰에 참가할 때 그러면 업체들로서는 이걸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능력이 없는 업체라도 이렇게 이렇게 꾸려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부서에서 이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도 일응 이해가 되기는 해서요.

○ 000 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다룬, 이전 사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예정원가조사보고서잖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한 측은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은 용역조사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용역보고서는 해당 업체에 주로 영업상 비밀 관련해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해당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한 게 아니어서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 000 위원(장)

네.

○ 000 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는 원가계산서라면 이거는 서울시의 내부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료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라면 저는 공개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서울시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 해당 조사 기관의 연구조사보고서를 지금 비공개결정 여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전에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용역업체의 연구조사보고서는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비공개 사례들로 결정한 게 많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5호로 비공개를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7호로 바꿔서 비공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 000 위원(장)

입찰계약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5호도 포섭을 하고요.

저희가 법령 같은 경우는, 조항 같은 경우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항을 결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 검토자료만으로 끝나버리면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입찰계약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입찰계약을 위한 검토보고서니까 거기에서 제시된 서류들은 비공개로 하는 걸로 하고, 입찰계약으로 해서요.

또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7호도 넣고 비공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7호에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게 서울시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를 맡겼을 경우에 만일 이게 공유가 되면 다른 조사기관은 이 지금 용역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시켜서 연구조사보고서를 낼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연구조사보고서는 사실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도 7호만을 통해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나요?

○ 000 위원(장)

5호를 포섭하느냐 7호만 하느냐 이건가요, 지금?

○ 000 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임의로 비공개 사유를 따로 정하지 말고요.

서울시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5호 사유가 아니라 7호 사유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고 해서 그쪽 부서에서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안전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변경해서 안전으로 7호를 비공개 사유로 올리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보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000 위원(장)

부서에서는 7호 사유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 서기

그냥 5호 입찰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비공개 사유에 초점을 맞춰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네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로 안 올렸는데, 우리가 임의로 7호에 해당된다, 영업상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안 맞다는거지요.

○ 000 위원(장)

일단 담당자가 들어오셔서 해당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말씀에 앞서서 아까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000 위원(장)

말씀하세요.

○ 담당자

저희 입찰을 할 때 예정원가에 더해서 원가계산서 한 장짜리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같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자님, 제가 질문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해당 부서의 용역을 받아서 업체에서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문제는 아까 담당자님께서 이 업체가 아니라 향후에 다른 업체에도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이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에 만일 서울시가

다른 조사기관에 이 동종의 연구용역과제를 줬을 때 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업데이트시키는 조사보고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담당자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업체로서는 외부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내부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사유로 7호를 보지는 않나요?

○ 담당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합당한 측면이 있고요. 7호로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담당자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로서 업체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견을 덧붙여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통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담당자님께서 정말 이 업체가 서울시에 용역과제보고서를 제출한 것인데, 우리는 이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 향후에 다른 업체에서 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유사연구 용역보고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안전을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 담당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000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들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000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결로 하고요.

○ 000 위원(장)

담당자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업체에서는 지금 예정원가조사보고서가 자기네
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만일 해당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 의견을 덧붙여 달라는 거지요.

○ 담당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제2024-9호건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000 위원(장)

보류하는 결정으로.

○ 000 위원(장)

의견 보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보류한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은 보류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9호는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10, -11, -12, -13] : (시설보수과-483) 수처리

시설 덮개 제작 구매(2차)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 000 위원(장)

다음 건은 의안번호 제2024-10호, 제2024-11호, 제2024-12호, 제2024-13호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주무관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이의신청건은 4건인데요. 지금 청구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사안은 거의 동종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수처리시설덮개 제작해서 납품을 한 이 회사와는 지금 계약을 취소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담당자

지금 계약취소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이의소송을 내서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사안을 보면 수처리시설덮개 제작 구매 2차인데, 1차는 문제없이 끝났습니까?

○ 담당자

계약해지됐습니다.

○ 000 위원(장)

1차도 계약해지됐어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리고 지금 2차도 계약해지인 거네요?

○ 담당자

2차는 지금 3월 30일자 기준으로 계약해지 예정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그래서 이 수처리시설댁개 관련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아마도 지금 밀폐형댁개로 발주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담당자

댁개 맞습니다.

○ 000 위원(장)

밀폐형댁개이고요.

재질은 SMC입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입니까, 뭐지요?

○ 담당자

알루미늄입니다.

최초 계약을 수의계약 사유인 성능인증으로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성능인증 제품을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타제품으로 납품하려고 해서 그 규격변경이 안 된다는 공문을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청구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보면, 결국 지금 여기 비공개로 보면 사업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해서 설명 미비다, 그다음에 물품이 도로에 적치돼 있기 때문에 치위달라 이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나요?

○ 담당자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 저희 쪽으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저희가 향후 의사결정하는 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어쨌든 지금 개별 청구인들이 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개별 안건만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이 해당 2차 납품된 게 성능인증, 그리고 지금 적치돼 있는 물건 내용밖에 없는데 이걸 굳이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지금 보면 비공개 자료가 여기 업체 대표한테 회신이 나간 거지요?

○ 담당자

나갔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들과 여기 업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담당자

업체랑 관련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민원인들인 거예요?

○ 담당자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게 회신으로 업체에 나갔다고 하면 사업 관련 요청이 업체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 회신이 나갔던 것인가요?

○ 담당자

규격변경 요청에 대한, 그런 공문에 대한...

○ 000 위원(장)

규격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이 공문이 나갔다는 거예요?

○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구인들은 딱 이 회신, 이 제목의 이 문건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다른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000 위원(장)

사이트에 이 문서가 비공개로 올라와 있어서 이 문서가 뭘까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이거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문 하나 딱 쓰여 있는 내용 같거든요. 그냥 불가하다는 내용 통보요. 그래서 이게 검토해 주신 내용하고는 진행 중인 사안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소송자료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그게 비공개 사유지만,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소송의 전제가 되는 내용들을 그냥 사전에 통보한 것들이라서요. 이 문서 자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서울시 사이트에 비공개로 올려놓은 이유는 뭔가요?

○ 담당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비공개 올렸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 내부검토 중이면 아직 이게 진행이, 내부검토가 다 끝나지 않은 건가요?

○ 담당자

지금도 계속 저쪽에서는 인정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게 혹시 내부검토로 포섭을 한다면 종료일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을까요?

○ 담당자

사실은 계약해지가 완료가 되고 소송이 끝나야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주무관님,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후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이 사안이 계약해지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상황인 것도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재판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4건에 관련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의 회신공문을 보시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청 성능인증 뭐 이것도 이미 다 공지가 된 성능인증번호일 거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비공개로 해서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줄 내용은 하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아까 내부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 관련해서 내부검토가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함을 통보한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이라서요. 이 내용 자체가 공개된다고 해서 어떤 서울시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 거로 보이지는 않아서요.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저도 이게 해당 업체에 회신이 나간 거라서 향후 소송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규격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된다 이런 회신으로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서울시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일하게 공문 공개하는 결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000 위원(장)

담당자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10호, 제2024-11호, 제2024-12호, 제2024-13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